#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4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이강일·김남근·김남희

김우영 · 김태선 · 김현정

민병덕 • 박주민 • 박희승

염태영 · 이용우 · 이재관

정준호 · 정진욱 · 황명선

황운하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·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 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,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청년이나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계층의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, 전월세신고제 등 2020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'임대차 3법'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3제2호·제3호 및 제5호 신

설).

법률 제 호

##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제2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·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의3제1항·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,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있다는 사항
- 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항
- 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임대 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3(임대차 중개 시의 설	제25조의3(임대차 중개 시의 설
명의무) 개업공인중개사는 주	명의무)
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	
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
	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임차
	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,
	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
	여 행사할 수 있다는 사항
<u>&lt;신 설&gt;</u>	3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7조
	제2항에 따라 차임 등의 증액
	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
	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
	하지 못한다는 사항
<u>2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5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
	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에
	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
	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
	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
	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

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는 사항